

RFC(크로스(자전거래)요청) 기능

중앙 집중주문장을 통한 자전거래를 하십시오

크로스요청(RFC)이란

- RFC, 즉 크로스요청이란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옵션상품이나 옵션전략의 매도와 매수 주문을 단일 티켓으로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주문유형으로서 CME Globex 상의 중앙집중 주문장에서 이용 가능합니다.
- 크로스요청 절차는 체결전 논의를 허용하나 크로스요청 제출 전에 모든 시장참가자에게 통지할 것으로 요구합니다.
- 모든 시장참가자는 특정 옵션에 대한 관심을 호가요청(RFQ)을 통하여 통지받게 됩니다. 시장참가자 및 유동성공급자는 자신의 최선 호가로 응할 수 있습니다.

크로스요청(RFC) 요건

- 크로스요청(RFC) 제출 전에 반드시 호가요청(RFQ)이 먼저 입력되어야 합니다.
- 트레이더는 호가요청에 이어서 지정된 대기시간 동안 기다린 후, 매도/매수 양 주문을 포함하는 크로스요청 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크로스요청 주문을 호가요청 후 30초가 경과한 후까지도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 호가요청을 재제출하여야 합니다.

체결전 논의

- › 체결전 논의란 시장참여자가 시장에 주문을 표시하기에 앞서서 거래의 집행에 관한 의사를 분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참여자들간에 행하는 논의입니다. 각 상품별로 허용되는 방식과 시점에 관하여 상이한 규칙이 적용됩니다.
- › 체결전 논의는 CME Globex 상에서의 크로스요청(RFC)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량, 가격,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

더 자세한 사항은 cmegroup.com/mran을 방문하시어 “체결전 논의”를 클릭하십시오.

	곡물 및 유지종자	가축 및 낙농	금리	에너지	FX	주가지수	금속
대기시간	15초	15 초	5 초	15 초	15 초	5 초	15 초
허용가능시간	유럽거래시간	정규거래시간 및유럽거래시간	정규거래시간 및유럽거래시간	정규거래시간 및유럽거래시간	정규거래시간 및유럽거래시간	정규거래시간 및유럽거래시간	정규거래시간 및유럽거래시간

크로스요청 실행 방법

크로스요청 기능은 거래소의 여러 접근방식에서 지원됩니다. 그 중에는 특화된 크로스요청 티켓을 통하여 호가요청(RFQ) 입력 후에 대기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 여러 기능이 풍부한 CME Direct 도 있습니다.

CME Direct 크로스요청 티켓(RFC Ticket)

- 크로스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호가요청을 자동으로 제출 가능
- 이용자는 체결 전에 크로스요청을 언제든지 취소 가능
- “제출” 버튼은 대기시간 중에만 활성화
- 30초 이상 경과시, 호가요청을 재제출하여야 함



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cmegroup.com/rfc 을 클릭하십시오.

선물 및 스왑 거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. 선물 및 스왑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투자이며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 및 스왑 포지션에 예치된 증거금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거래 시 손해를 보더라도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의 자금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또한 모든 거래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한 번의 거래에는 이러한 자금 중 일부만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본 자료상의 모든 정보 및 기타 자료들을 금융상품에 대한 매수/매도의 제안이나 권유, 금융 관련 자문의 제공, 거래 플랫폼의 구축, 예치금의 활용 또는 수취, 관할권과 유형을 막론한 다른 어떠한 것이든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. 본 자료상의 정보는 정보전달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자문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뿐더러 자문으로 받아들여져서도 안 됩니다. 본 정보는 개인의 목표, 재정적 여건 또는 필요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. 본 자료에 따라 행동을 취하거나 이에 의존하기에 앞서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

본 자료상의 정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. CME 그룹은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본 자료는 CME그룹이나 또는 그 임직원,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고안되거나 확인 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거나 해당 정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CME그룹은 해당 정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,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CME그룹은 해당 정보 또는 제공되는 하이퍼링크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가 외부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라도, CME 그룹은 어떠한 제3자 또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하여도 지지 또는 권고, 승인, 보증이나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.

CME그룹 및 “芝商所”는 CME Group Inc.의 상표입니다. Globex 로고, E-mini, E-micro, Globex, CME 및 Chicago Mercantile Exchange는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. (‘CME’)의 상표입니다. CBOT 및 Chicago Board of Trade는 Board of Trade of the City of Chicago, Inc. (‘CBOT’)의 상표입니다. ClearPort 및 NYMEX는 New York Mercantile Exchange, Inc. (‘NYMEX’)의 상표입니다. 이들 상표는 그 소유권자의 서면 승인 없이 수정, 복제, 검색시스템에 저장, 전송, 복사, 배포 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Dow Jones는 Dow Jones Company, Inc.의 상표입니다. 그 외의 모든 상표는 각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.

본문에서 규정 및 상품명세에 대해 언급한 모든 내용은 CME, CBOT, NYMEX의 공식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 공식 규정은 본문 내용에 우선합니다. 계약 명세와 관련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현행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.

CME와 CBOT 및 NYMEX는 각각 싱가포르에서 Recognized Market Operator (공인시장운영자)로 등록되어 있으며 홍콩특별행정구(Hong Kong S.A.R.)의 Automated Trading Service (자동매서비스) 제공자로 승인을 받았습니. 뿐만 아니라 본 자료 상의 정보는 일본 법률 제25호 금융상품거래법(1948년, 개정)에 의한 어떠한 해외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나 또는 해외금융상품시장 거래에 대한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. CME Europe Limited는 홍콩, 싱가포르, 일본 등 아시아의 어떤 관할권에서도 어떠한 유형의 금융서비스도 제공자로서, 또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만한,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. CME 그룹 산하의 어떤 기관도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대만의 어떠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도 이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만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. 본 자료는 한국 및 호주에서 각각 자본시장법 제9조 5항 및 2001년 기업법(C)와 그 관련 규정상의 정의에 의한 “전문투자자”에의 배포를 위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배포가 제한됩니다.